

## 오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제정 2000년 12월 30일 규칙 제451호  
개정 2001년 10월 31일 규칙 제476호 부칙  
개정 2011년 1월 10일 규칙 제680호  
(제명개정 포함)  
개정 2011년 8월 4일 규칙 제693호  
(제명개정 포함)  
일부개정 2011년 12월 20일 규칙 제70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년 6월 22일 규칙 제78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10, 2011. 8. 4, 2016. 6. 22>

**제2조(적용)** 이 규칙은 오산시 및 시 소속행정기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 8. 4>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1. 1. 10, 2016. 6. 22>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6. 22>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6. 22>

**제5조(지급신청)**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 오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부서,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1. 10. 31, 2011. 12. 20, 2016. 6. 22>

**제6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6. 22>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 6. 22>

**제7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2>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8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2016. 6. 22>

**제9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 6. 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31 규칙 제476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10 규칙 제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4 규칙 제6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0 규칙 제70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오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5조 중 “소속 담당관실·과”를 “소속 부서”로 한다.

㉒ 부터 ㉗ 까지 생략

**부칙** <2016. 6. 22 규칙 제7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6. 22>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   |      |            |                              |               |       |
|---|------|------------|------------------------------|---------------|-------|
| 소 속   |      | 공무원<br>구 분 | <input type="checkbox"/> 별정직 | 직 종·<br>상당계급  | ( 호봉) |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       |
|   | (한자) | 주 소        | □□□-□□□                      |               |       |
| 전화번호<br>(자 택)   |      | 근 속<br>기 간 | 년 월                          | 최초임용일         | 년 월 일 |
|   |      |            |                              | 근무상한<br>연 월 일 | 년 월 일 |
| 수당청구액   |      |            | 산출내역                         |               |       |
| <p>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불 입 : 자진퇴직원 1부</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인)</p> |      |            |                              |               |       |
|   | 확 인  | 인사담당       | (인)                          | 연금담당          | (인)   |
|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소속기관의 장) (인)</p> <p>오 산 시 장 귀하</p>   |      |            |                              |               |       |

주) 자필로 기재하고 □는 v표를 하되, 굵은선 내는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6. 22>

## 자 진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진 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인)

오 산 시 장 귀하